

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19846      |
| 의 퇴 인  | 남인순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6. 7. 15. |
| 추 계 번호 | 26C3414      |

#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 고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21조<br>(급여의 신청)        |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<br>1.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<br>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| 재량규정 |
| 2  | 안 제31조의2<br>(인사상 우대 조치 등) |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발굴,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21조<br>(급여의 신청)       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| 2  | 안 제31조의2<br>(인사상 우대 조치 등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 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, 또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, 이를 시행하여 관련 지원을 제공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 - 본인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던 사람에게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급여가 지급될 수 있고, 이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또한, 개정안에 따라 수급권자의 발굴, 지원 및 자활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거나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신규로 이 법에 따른 급여가 지급될 사람의 수와 지원 내용, 포상금을 지급받을 공무원의 수와 포상금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  - 안 제2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직권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알 수 없음
  - 또한, 안 제31조의2는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의 수와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### Ⅲ. 부대의견

- 없음

### Ⅳ. 작성자

-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사회비용추계과 | 김우림 | 문지은 |

-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|
| 김우림 | 02-6788-3738 | wrkim@nabo.go.kr |